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대표하는 이민 대리인을 위한
윤리 규범**

마니토바주 노동 및 이민부는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대표하는 모든 이민 대리인들(수수료를 받는 개인 대리인들)에게 다음의 직업 윤리 강령 준수에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대표하고자 하는 모든 이민 대리인들은 반드시 다음의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1. 독립적인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든 마니토바주 또는 마니토바 주정부 부서들(노동 및 이민부와 산업, 무역 및 광산부 또는 에이전시들 포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그리고 모든 서류에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에 있어 이민 대리인의 서비스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예상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과의 첫 만남이나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이 이민 대리인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3. 모든 고객들은 이민 대리인을 고용한 중에도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담당부서에 스스로 직접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이민 대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이민 대리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대행업무를 수락해야 합니다.
5. 고객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니토바 주정부에 알리고 고객의 파일과 관련하여 주정부로부터의 받은 모든 서한을 수정이나 부당한 지체없이 바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6. 고객의 이민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히 그리고 시간을 준수하는 자세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7. 거짓이나 오해를 줄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고객의 신청서한, 보고서 또는 여타 서류에 서명, 제출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8. 개인적으로 또는 고객을 대표하여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9.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일하거나 제휴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고객의 문제에 관련하여 직업상 관계 중에 취득한 모든 고객 정보들은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며 고객이 허락하는 경우와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또는 법적으로 요청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피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를 통해 고객에게 이해상반의 존재와 상황을 모두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본 이해상반 사항이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면 마니토바주에도 고지해야 합니다.
12. 외부 사업이나 직업상 이해로 이민 대리인으로서의 직업적 정직함, 독립성 또는 능력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13. 고객의 관심이 있는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과 이민에 관련된 모든 여타 문제들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4.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마니토바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거나 또는 사업을 운영할 참의도를 지녀야 함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의도를 지니지 않는 고객을 대신하여 고의적으로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15.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과 미디어에서 정직하고 오해를 줄만한 표현, 과장 또는 암시를 삼가야 합니다. (예: 마니토바주는 어떤 이민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와도 특별한 혹은 우대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대리인은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이민, 또는 시민권에서의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 대리인은 마니토바 노동 및 이민부, 마니토바 산업, 무역 및 광산부 또는 마니토바주의 우대 등을 암시하는 특별 관계나 협정을 맺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16. 전부 공개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대행하기로 일을 맡고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 선언

본인, _____ 은(는)
(이민 대리인 - 성명)

본 윤리 규범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민 대리인으로서의 본인 서비스로부터 기대되어지는 설명된 기준을 이해하고 있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의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규범을 준수할 것입니다.

성명 _____ 주소 _____

제공 업무 _____

이민 대리인 서명

증인 서명

날짜

신청인 선언 (유대리인)

본인, _____은(는)
[주신청인 - 성명]

본 윤리 규범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준비에 있어 본인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한 이민 대리인으로부터 기대되어지는 설명된 기준을 이해함을 이에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청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명 _____ 주소 _____

제공 업무 _____

_____ 주신청인 서명 _____ 증인 서명 _____ 날짜

CSIC# _____

신청인 선언 (무대리인)

본인, _____은(는)
[주신청인 - 성명]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이민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_____ 주신청인 서명 _____ 증인 서명 _____ 날짜

신청인 이니셜 _____ 페이지 4/4

(Rev. Jan 26, 2010)